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4
----------	-----

2015. 7.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 6. 10.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5. 6. 17.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7. 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 김희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02억원을 포함한 7조 9,151억원임
-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7조 9,253억원,
-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7조 7,418억원,
- 세계잉여금은 1,83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57억원임

나. 세입결산

- 201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원으로
- 세입징수결정액 7조 9,428억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1%임
- 불납결손액은 1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62억원임
-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5,980억원과 국고보조금 189억원으로 총 4조 6,169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8.2%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4,870억원,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586억원으로 총 2조 5,45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의 32.1%임
- 기타 민간이전 수입은 96억원(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40억원(0.1%)임
- 자체수입은 2,081억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2.6%임
 -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409억원이며,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억원,
 - 재산수입 427억원, 이자수입 41억원
 - 기타수입 151억원임
- 지방교육채는 2,421억이며, 이월금은 2,990억원임

다. 세출결산

- 2014년도 총 세출액은 7조 7,4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이며, 560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173억원임
-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3,051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98억원,
 - 교육일반 부문에 4,169억원을 지출하였음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2014년도 예산 이용은 없음
- 2014년도 예산전용액은 240억원으로
총 31개 사업에 48건을 전용하였음
- 2014년도 예산 이체는 1건, 399억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로 소관업무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임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은 총 560억원으로,
명시이월액 142억원이며, 사고이월액 417억원임
- 계속비는 없음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2014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전년도말 대비 426억원이 감소한 2,893억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620억원이 증가한 3,732억원임

사.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조 518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21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유물품은 38,624건에 1,014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음

아. 재무제표

○ 2014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5,946억원, 총 부채 1조 3,216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730억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7,914억원, 총 비용 7조 8,247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33억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엄지운)

1. 결산 개요

○ 2014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조 4,391억 2,900만원	에서
추경예산액	2,336억원	
간주처리분	321억 9,1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7조 7,049억 2,0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Delta 4.2\%$ 감소한 규모임.

-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	7조 7,049억 2,000만원	에서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2,102억 1,300만원	을 합한

7조 9,151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Delta 4.1\%$ 감소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1,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Delta 3.0\%$, $\Delta 2,458$ 억 8,600만원 감소한 것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Delta 1.6\%$, $\Delta 1,304$ 억 3,600만원

감소한 7조 7,418억 1,500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Delta 38.6\%$ 감소한 1,835억 100만원으로,

- 이월금 560억 2,800만원(명시이월비 142억 9,900만원, 사고이월비 417억 2,900만원), 보조금 잔액 17억 7,700만원, 지방채 상환은 없는 바, 순세계잉여금은 1,256억 9,600만원임

〈표 3-1〉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최종예산(A)	7,704,920	8,045,686	7,830,134
전년도이월액(B)	210,213	210,350	176,007
예산현액(C=A+B)	7,915,133	8,256,036	8,006,141
세입결산액(D)	7,925,316	8,171,202	8,056,769
세출결산액(E)	7,741,815	7,872,251	7,465,629
세계잉여금(F=D-E)	183,501	298,951	591,140
명시이월비	14,299	106,188	7,921
사고이월비	41,729	104,026	202,428
계속비	0	0	0
보조금잔액	1,777	243	311
지방채상환	0	0	76,096
순세계잉여금(G)	125,696	88,494	304,384
순세계잉여금률 (G/C)	1.6	1.1	3.8

2.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음¹⁾

〈표 3-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액 대비수납	
						증감 (C-A)	수납율 (C/A)	증감 (C-B)	수납율 (C/B)
2014	7,915,133	7,942,799	7,925,316	1,206	16,275	10,183	100.1	△17,483	99.7
2013	8,256,035	8,193,323	8,171,202	643	21,478	△84,833	99.0	△22,121	99.7
증감	금액	△340,902	△250,524	△245,886	563	△5,203			
	비율	△4.1	△3.0	△3.0	87.5	△24.2			

-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1,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8조 1,712억 200만원) 보다 △3.0%, △2,458억 8,6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세입결산 결과, 당초 징수결정액(7조 9,427억 9,900만원) 대비 99.7%(7조 9,253억 1,600만원)를 장수하였고, 불납결손이 12억 600만원, 미수납액이 162억 7,500만원임

1) 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비법정 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자체수입 :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선택적교육수입(평생학습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보증금회수, 제제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자체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14억 7,800만원)보다 △52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체수입이 서울시교육청의 유일한 자주재원인 점을 고려하여 미수납액의 발생원인을 세목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재원이 당초 예정한 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2〉 세입결산 총괄 ('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예 산 액	7,704,920	8,045,686	7,830,134
예산현액 (A)	7,915,133	8,256,035	8,006,141
징수결정액 (B)	7,942,799	8,193,323	8,078,779
수납액(결산액) (C)	7,925,316	8,171,202	8,056,769
미수납액(D)	16,275	21,478	21,238
(D/B)	(0.2)	(0.3)	(0.3)
불납결손액(E)	1,206	643	772
(E/B)	(0.01)	(0.01)	(0.01)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 (C/A)	100.1	99.0	100.6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 (C/B)	99.7	99.7	99.7

나. 자원별 세입 결산

○ 자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3〉 자원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 비율	예산현액대비	
					증 감 (A-C)	수납률 (C/A)
합 계	7,915,133	7,942,799	7,925,316	100.0	△10,183	100.1
이 전 수 입	7,164,265	7,176,075	7,176,075	90.5	△11,810	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89,799	4,597,975	4,597,975	58.0	△8,176	100.2
국고보조금	18,953	18,953	18,953	0.2	0	100.0
법정 이전수입	2,486,309	2,486,961	2,486,961	31.3	△652	100.0
비법정 이전수입	56,801	58,572	58,572	0.7	△1,771	103.1
민간이전수입	8,401	9,612	9,612	0.1	△1,211	114.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002	4,002	4,002	0.0	0	100.0
자 체 수 입	209,117	225,630	208,147	2.6	970	99.5
기본적 교육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42,355	142,275	140,992	1.7	1,363	99.1
선택적 교육 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648	1,836	1,836	0.0	812	69.3
사용료 및 수수료	5,432	5,310	5,293	0.1	139	97.4
자산임대수입	490	580	518	0.0	△28	105.7
자산매각대	39,974	42,208	42,145	0.5	△2,171	105.4
이 자 수 입	4,000	4,117	4,118	0.1	△118	102.9
보증금회수	30	415	415	0.0	△385	1,383
체재금수입	547	1,594	854	0.0	△307	156.1
기 타 수 입	13,000	9,278	9,239	0.1	3,761	71.0
과년도수입	641	18,017	2,737	0.1	△2,096	426.9
지방교육채	243,044	242,143	242,143	3.06	901	99.6
이월금	298,707	298,951	298,951	3.77	△244	100.1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세입결산액(7조 9,253억 1,600만원)중 90.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은 세입예산의 58.0%인 4조 5,979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은 0.2%인 189억 5,300만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입금(법정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은 32.1%인 2조 5,455억 3,3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0.2%인 136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조 1,642억 6,500만원 대비 수납액이 7조 1,760억 7,500만원으로써 118억 1,000만원이 초과수납된 바, 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81억 7,600만원과 민간이전수입 12억 1,100만원 등이 초과수납된 것임

〈표 3-4〉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예산현액(A)	7,164,265	7,394,448	7,421,220
수 납 액(B)	7,176,075	7,298,329	7,445,083
초과수납액(B-A)	11,810	△96,119	23,86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2)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예산편성액(4조 5,897억 9,900만원) 대비 81억 7,600만원($\Delta 0.2\%$)이 감소된 4조 5,979억 7,500만원이 전입된 바,

〈표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실전입금	초과수납액	수납율
합 계	4,589,799	4,597,975	8,176	100.2
보통교부금	4,426,557	4,426,557	0	100.0
특별교부금	163,242	171,418	8,176	105.0

- **보통교부금**은 2014년 4월 교육부가 4조 4,265억 5,700만원을 확정³⁾ 통보한 이후 전액 교부한 것이나
-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14연도 본예산 편성 전에 예정교부(4조 5,344억 700만원)보다 $\Delta 2.3\%$ 인 $\Delta 1,078$ 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7조」⁴⁾ 및 같은법 시행령⁵⁾에 의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0.>

3) 2014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95, 2014.4.18.)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정산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회계연도 중 확정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감액은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의 감조정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교육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측가능성과 계속성을 저해시키는 외부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최소화 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에도 국내 경기 여건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와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예산에 유동성이 상존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 수요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것으로 당초 편성액(1,632억 4,200백만원)보다 5.0%, 81억 7,600만원이 증가된 1,714억 1,800만원이 수납된 것임

· 초과수납액⁶⁾은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12월에 교부(2014. 12. 22.)된 학교체육활성화사업 등이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성립전 예산 편성(우선확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11개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을 우선확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편성액(189억 5,300만원) 전액이 수납된 것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산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산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6) 초과수납액 처리 : 연말에 교부되어 우선확정하지 않은 특별교부금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으로서, 예산액(2조 4,863억 900만원) 보다 6억 5,200만원이 증가된 2조 4,869억 6,100만원이 전입되었음

- 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설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⁸⁾이 예산보다 6억 5,200만원이 초과하여 전입되었기 때문임

〈표 3-6〉 법정전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실전입금 (B)	증감 (B-A)
합 계	2,486,309	2,486,961	652
지방교육세	1,162,440	1,162,440	-
시 도 세	971,261	971,261	-
담배소비세	247,466	247,466	-
학교용지부담금	17,785	17,785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7,357	88,009	65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75조에 의한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법정전입금중 1,818억 6,900만원이 미정산된 바

- 미정산된 항목은 지방교육세(1,425억 4,300만원), 시도세전입금(411억 3,400만원), 담배소비세(△18억 8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⁹⁾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 지난 2012회계연도 미정산분(154억 8,400만원)의 경우에도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바 있고, 2013회계연도 미정산분(373억 3,500만원)도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정산이 완료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2014회계연도분 법정전입금 미정산분 1,818억 6,900만원의 경우에도 2016년도 본예산까지는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표 3-7〉 법정전입금 미전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산기준 전입대상액 (A)	2014년도분 전입액 (B)	미전입액 (A-B)
합 계	2,445,536	2,263,666	181,869
지방교육세	1,254,246	1,111,703	142,543
시 도 세	947,249	906,114	41,134
담배소비세	244,041	245,849	△1,808

9)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2014회계연도에 대한 서울시 법정전입금의 분기별 전입비율을 검토하면, 1/4분기에 12.6%, 2/4분기에 19.2% 등 2/4분기까지 누계비율이 31.8%로 직전회계연도 2/4분기까지의 누계비율(25.3%)에 비해 전입비율이 6.5%p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향후에도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3/4분기 이후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전입되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법정전입금 분기별 세부 전입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원별	결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2014	사도세	971,261	130,300 (13.4)	259,496 (26.7)	389,796 (40.1)	293,615 (30.2)	683,411 (70.3)	287,850 (29.7)	971,261 (100)
	지방교육세	1,162,440	139,551 (12)	135,710 (11.7)	275,261 (23.7)	344,829 (29.7)	620,090 (53.4)	542,350 (46.6)	1,162,440 (100)
	담배소비세	247,466	32,854 (13.3)	47,868 (19.3)	80,722 (32.6)	67,613 (27.3)	148,335 (59.9)	99,131 (40.1)	247,466 (100)
	학교용자매입비부담	17,785		17,785 (100)	17,785 (100)				
	계	2,398,952	302,705 (12.6)	460,859 (19.2)	763,564 (31.8)	706,057 (29.4)	1,451,836 (61.2)	947,116 (38.8)	2,398,952 (100)
2013	사도세	842,491	62,835 (7.5)	194,488 (23)	257,323 (30.5)	327,995 (39.0)	585,318 (69.5)	257,173 (30.5)	842,491 (100)
	지방교육세	1,121,138	98,922 (8.8)	132,369 (11.8)	231,291 (20.6)	345,406 (30.8)	576,697 (51.4)	544,441 (48.6)	1,121,138 (100)
	담배소비세	238,691	22,129 (9.3)	56,167 (23.5)	78,296 (32.8)	76,890 (32.2)	155,186 (65)	83,505 (35)	238,691 (100)
	학교용자매입비부담	39,270						39,270 (100)	39,270 (100)
	계	2,241,590	183,886 (8.2)	383,024 (17.1)	566,910 (25.3)	750,291 (33.5)	1,317,201 (58.8)	924,389 (41.2)	2,241,590 (100)
2012	사도세	918,076	97,011 (10.6)	179,745 (19.6)	276,756 (30.1)	351,607 (38.3)	628,363 (68.4)	289,713 (31.6)	918,076 (100)
	지방교육세	1,247,393	189,589 (15.2)	65,806 (5.3)	255,395 (20.5)	365,831 (29.3)	621,226 (49.8)	626,167 (50.2)	1,247,393 (100)
	담배소비세	246,618	27,560 (11.2)	36,746 (14.9)	64,306 (26.1)	92,837 (37.6)	157,143 (63.7)	89,475 (36.3)	246,618 (100)
	학교용자매입비부담	22,091						22,091 (100)	22,091 (100)
	계	2,434,178	314,160 (12.9)	282,297 (11.6)	596,457 (24.5)	810,275 (33.2)	1,406,732 (57.7)	1,027,446 (42.3)	2,434,178 (100)

2) 자체수입

가) 자체수입

- 2014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은 2,081억 4,7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7조 9,253억 1,600만원)의 2.6%에 해당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2%(2,081억 4,600만원)로서 직전회계연도 수납률 91.1%(2,267억 4,700만원) 보다 △8.9% (△186억 1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9〉 자체수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결산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금액 (C)	비율 (C/B)	금액 (D)	비율 (D/B)	금액 (E)	비율 (E/B)
자체수입		209,117	225,630	208,146	92.2	1,207	0.5	16,276	7.2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 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42,355	142,275	140,991	99.0	414	0.2	870	0.6
	선택적 교육 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648	1,836	1,836	100.0	-	-	-	-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5,432	5,309	5,293	99.6	-	-	16	0.3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490	580	518	89.3	-	-	62	10.6
	자산매각대	39,974	42,208	42,145	99.8	-	-	63	0.1
이자수입	이자수입	4,000	4,117	4,117	100.0	-	-	-	-
자체수입 제재금수입	보증금회수	30	415	415	100.0	-	-	-	-
	제재금수입	547	1,594	854	53.5	10	0.3	730	45.7
	기타수입	13,000	9,278	9,239	99.5	-	-	39	0.4
	과년도수입	641	18,017	2,737	15.1	783	4.3	14,496	80.4

○ 자체수입의 67.7%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¹⁰⁾ 및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¹¹⁾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의 99.0%인 1,409억 9,100만원이 수납된 것임

-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의 수납률은 높게 검토되나, 직전회계연도(1,549억 6,300만원)보다 △139억 7,200만원(△9.0%)이 감소된 바, 입학금과 수업료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납부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립고등학교의 학생수(160,833명→153,185명)가 줄어 수납액이 감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표 3-10〉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증감	공립고 학생수
	합계	입학금	수업료		
2014	140,991	458	140,553	△13,972	153,185
2013	154,963	496	154,467	△2,904	160,833
2012	157,867	546	157,321	-	164,178

※ 공립고 학생수 : 서울교육통계 매년 4. 1. 기준

10)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원)	입학금(원)	비고
유치원 (공립)	년 액	396,000	5,200	
	분기액	99,000		
	월 액	33,000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5,300	
	반기액	67,500		

- 또한, 지난 2015. 5월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¹²⁾되어 일반계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함으로써 2016년부터는 입학금의 수납액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1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 제3조 제6항 신설

제3조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참고 제2조 제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 **자산매각대**는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21억 4,500만원이 수납되어 직전회계연도(196억 2,400만원)보다 225억 2,100만원(114.7%)이 증가된 것임

- ‘**공항초등학교의 부지 매각**’¹³⁾의 경우는 마곡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공항초 이전이 결정되어 협의보상금 439억 9,500만원 중 직전회계연도에 토지계약보증금 43억 9,900만원을 SH공사로부터 납부 받은 후 남아있던 잔금 395억 9,500만원을 수납한 것임

- 또한, ‘**노유초 부지 환매 대금 추가분**’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가칭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학교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수용예정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었고, 이에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2003년 당시 매입가 104억 6,800만원)한 것으로

· 토지 매수에서 환매 시점까지 9년이 경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3항¹⁴⁾에 의거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자, 환매대금증액 청구소송¹⁵⁾ 결과 당초 매입가 이외에 추가 증가된 지가상승분 13억 2,000만원을 수납한 것임

13) 공항초 부지 매각 추진 경과

- 2007.12.28.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서울시고시 제2007-491호)에 따라 학교 이전 결정
- 2013. 4. 4. 마곡지구내 공항초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 2013. 7. 3. 공항초 토지 등 협의보상 계약 체결(SH공사)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협의보상금	계약금	잔금
토지	공항동 5-1	학교용지	19,520	41,163	4,116	37,047
	공항동 5-117	학교용지	17	12	1	11
물건	학교 2동 외 지장물 및 비품 등			2,820	282	2,538
합 계				43,995	4,399	39,595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③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화해권고 결정(2014. 1.10.) : 사건번호 2013가합516077 환매대금 증액

○ **이자수입**은 예산현액(40억원)보다 실제 41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이자수입의 경우, 직전회계연도(149억 900만원) 보다 △72.3%, △107억 9,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액 조정과 지연 교부로 인하여 예금평균잔액이 감소하였고, 자금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인건비,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대규모 예산집행으로 정기예금 운용액도 감소하였으며,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위해서는 교부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평균잔고도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이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금이자	정기예금		기타예금	
		평균잔액	정기예금이자	평균잔액	기타예금이자
2014	4,117	104,232	2,175	121,283	1,942
2013	14,909	337,589	10,142	252,754	4,768
2012	19,146	380,245	13,429	309,633	5,717

나)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 2014회계연도의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256억 3,000만원의 7.2%인 162억 7,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14억 7,800만원)보다 △52억 2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12〉 자체수입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D=A-B-C)	
				금액	비율(D/A)
2014	225,630	208,146	1,207	16,276	7.2
2013	230,064	207,943	643	21,478	9.3
증 감	△4,434	203	564	△5,202	△2.1

- 미수납 발생 주요내역을 검토하면,

과년도수입은 납부의무자의 재력부족 및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장기체납 변상금¹⁶⁾, 위약금, 과태료 등이 누적된 것으로서 2014회계연도의 미납액은 144억 9,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162억 7,600만원)의 89.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직전 회계연도 미수납액(182억 2,600만원) 보다 △37억 3,000만원(△20.4%)이 감소한 것이나, 징수결정액(180억 1,700만원) 대비 27억 3,700만원만 징수되어 미수납률은 80.4%에 이르고 있는 바,

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미수납액이 재력부족, 재산 압류 등 채무자의 경제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라고는 하나, 수납 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수납액의 추가적인 증가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3-13〉 미수납된 과년도 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변상금	위약금	그외수입	과태료	대지료	토지매각	대가료
금액	14,496	6,725	1,992	4,736	453	301	286	3
비율	100	46.4	13.7	32.7	3.1	2.1	1.9	0.1

〈표 3-14〉 자체수입 중 미수납 발생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비율 (D/A)	구성비	
계	199,432	216,230	198,747	1,207	16,276	7.53	100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41,905	141,816	140,532	414	870	0.6	5.3	0 수업료 -고등학교 : 471 0 지난연도 수업료 -고등학교 : 398
사용료수입	4,489	4,591	4,577	-	14	0.3	0.0	0 토지사용료 : 14
수수료수입	944	718	716	-	2	0.4	0.0	0 토지감정평가수수료 : 2
임대료수입	490	580	518	-	62	10.6	0.3	0 토지임대수입 : 62
토지매각	37,414	39,632	39,579	-	53	0.1	0.3	0 토지매각 : 53
기타유형 자산매각	4	12	2	-	10	83.3	0.0	0 관용차량매각 : 10
변상금	262	984	372	-	612	62.1	3.7	0 공유재산변상금 : 612
위약금	42	237	231	-	6	2.5	0.0	0 입찰보증금 위약금 : 6
연체료	154	217	139	3	75	34.5	0.4	0 공유재산연체료 : 62 0 기타연체료 : 13
과태료	90	149	105	7	37	25.3	0.2	0 학원·교습소과태료 : 37
기타수입	12,997	9,278	9,239	-	39	0.4	0.2	0 그외수입 : 39
과년도수입	641	18,017	2,737	783	14,496	80.4	89.0	0 과년도수입 : 14,496

※ 전체 자체수입항목 중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에 대한 현황

다) 자체수입 중 불납결손

○ 불납결손액은 12억 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억 4,300만원) 보다 87.7%, 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음

-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것은 시효가 완성된 학원과태료(7억 1,600백만원) 증가 및 시효완성 소송비용액(1억 9,800만원)의 감소가 주요 증감요인이나,

- 「지방재정법」 제82조17)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리가 증가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효완성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15〉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내역
			금액	구성비율	
계	160,199	143,513	1,207	100	
수업료	141,815	140,532	414	34.3	- 유치원,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 14 - 유치원, 고등학교 지난년도수업료 결손액 : 400
연체료	217	139	3	0.2	- 시효완성 공유재산 연체료 : 3
과태료	150	105	7	0.6	- 시효완성 학원과태료 : 7
과년도수입	18,017	2,737	783	64.9	- 시효완성 과년도수입 : 762

17)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3)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¹⁸⁾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세입결산액(7조 9,253억 1,600백만원)의 3.0%에 해당하는 총 2,421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 학교신설비(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조달을 위하여 595억 1,400만원을 발행하였고, 지난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목적의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 및 이자에 대해 차환(4.85%→3.21%)하여 1,826억 2,900백만원을 발행한 것임
 -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향후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상환 시까지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저금리 지방채 차환은 세출예산 관리에 필요하나 서울시에서 지난 2009년도 발행한 지방채 3,000억원을 2014회계연도에 차환하며 당초 5.27% 이자를 2.44%로 차환한 사례가 있어 교육청의 차환 이자에 대한 절감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4. 지방채의 차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6〉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발행액	상환재원	상환방법	이율 (변동)
합 계	242,143			
'14 학교신설	59,514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18
'공자기금 지방채 차환	182,629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21

4) 전년도이월금

- 2014회계연도의 전년도 이월금 결산액은 총 2,989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84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2억 4,300만원, 명시·사고이월비 2,102억 1,300백만원임

〈표 3-17〉 전년도 이월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 계	298,951	298,951
순세계잉여금	88,483	88,483
보조금사용잔액	243	243
전년도 이월사업비	210,213	210,213
명시 이월	106,188	106,188
사고 이월	104,025	104,025

3. 세출결산

가. 세출결산 총괄

- 2014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7조 7,049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02억 1,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조 9,151억 3,300만원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8조 2,560억 3,500만원) 대비 △4.1%, △3,409억 200만원 감소된 것임
- 세출결산 현황은 지출액이 7조 7,418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 2,800만원 (0.7%)이며, 1,172억 9,000만원(1.5%)은 불용되었음

〈표 4-1〉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A)	(B)	비율 (B/A)	(C)	비율 (B/A)	(D=A-B-C)	비율 (B/A)
2014	7,704,920	210,213	7,915,133	7,741,815	97.8	56,028	0.7	117,290	1.5
2013	8,045,686	210,349	8,256,035	7,872,251	95.4	210,213	2.5	173,571	2.1
증감	△340,766	△136	△340,902	△130,436	2.4	△154,185	△1.8	△56,281	△0.6
비율	△4.2	△0.1	△4.1	△1.7		△73.3		△32.4	

〈표 4-2〉 부문·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D)	
		비율 (B/A)	구성비	비율 (C/A)	비율 (D/A)			
합 계	7,915,133	7,741,815	97.8	100.0	56,028	0.7	117,290	1.5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67,499	7,305,058	97.8	94.4	55,293	0.7	107,148	1.4
인적자원운용	3,925,471	3,899,161	99.3	50.4	34	0.0	26,276	0.7
교수-학습활동지원	358,438	348,183	97.1	4.5	1,542	0.4	8,713	2.4
교육복지지원	863,856	841,287	97.4	10.9	79	0.0	22,490	2.6
보건/급식/체육활동	351,452	327,555	93.2	4.2	15,865	4.5	8,032	2.3
학교재정지원관리	1,572,471	1,568,703	99.8	20.3	0	0.0	3,768	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5,811	320,169	80.9	4.1	37,773	9.5	37,869	9.6
평생·직업교육	20,517	19,856	96.8	0.3	315	1.5	346	1.7
평생교육	16,843	16,183	96.1	0.2	315	1.9	345	2.0
직업교육	3,674	3,673	100.0	0.0	0	0.0	1	0.0
교육일반	427,117	416,901	97.6	5.4	420	0.1	9,796	2.3
교육행정일반	69,492	67,220	96.7	0.9	411	0.6	1,861	2.7
기관운영관리	46,684	42,775	91.6	0.6	9	0.0	3,900	8.4
지방채상환및리스토	309,456	306,906	99.2	4.0	0	0.0	2,550	0.8
예비비및기타	1,485	0	0.0	0.0	0	0.0	1,485	100.0

나. 불용액 관련¹⁹⁾

○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7조 9,151억 3,300만원)의 1.5%, 1,172억 9,0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1,735억 7,100만원, 불용률 2.1%) 보다 △562억 8,100만원(△32.4%) 감소하였음

- 불용액 발생규모가 감소한 것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14.12.19.)을 통하여 본예산 대비 △2,613억 900만원²⁰⁾을 감액 조정한 결과로 판단됨

19) '14년 11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된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조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에도 “집행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으로 표기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본조신설 2014.11.28.**]

-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
|----------------------|----------------------------|
|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세입예산액 | 가. 세출예산액 |
| 나. 이체 등 증감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 다. 세입예산 현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 라. 징수결정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 마. 수납액 |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 바. 불납결손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 사. 미수납액 | 사. 지출액 |
|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 | <u>자. 집행잔액</u> |

③~④ 생략

20) 절감액 세부내역 : 부동산의예산액 470억원, 자체절감액 2,143억 900만원

〈표 4-3〉 불용액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3	2012
예산현액	7,915,133	8,256,035	8,006,141
불용액 (비율)	117,290 (1.5)	173,571 (2.1)	330,163 (4.1)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56,281 (△32.4)	△156,592 (△47.4)	

-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를 불과 2개월 앞둔 2014.10.31. 추경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예비결산 등의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세출예산의 추가적인 감액조정으로 불용액 규모를 더욱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발생사유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전체 불용액의 70.4%(825억 2,900만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수립 시 소요예산 과다 추계 및 추경 시 소극적 감액조정의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표 4-4〉 불용액 발생사유('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 용 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4	117,290 (100)	17,446 (14.9)	0 (0)	17,315 (14.7)	82,529 (70.4)
2013	173,571 (100)	12,445 (7.2)	4 (0)	9,987 (5.8)	151,135 (87.0)
2012	330,163 (100)	22,579 (6.8)	3,157 (1.0)	88,383 (26.8)	216,044 (65.4)

1)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불용액이 50억원 이상 발생사업을 검토하면

〈표 4-5〉 50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직년회계연도(2013)			소관부서
		비율	구성비 ^{주1)}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학교신증설	234,049	25,298	10.8	21.6	283,288	7,366	2.6	학 교 지원과
누리과정지원	523,420	15,184	2.9	12.9	478,208	20,625	4.3	유 아 교육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172,760	11,674	6.8	10.0	192,332	33,983	17.7	예 산 담당관
교원인건비	3,256,375	9,802	0.3	8.4	3,248,910	7,599	0.2	예 산 담당관
학교급식운영	292,089	6,971	2.4	5.9	355,247	8,665	2.4	체 육 건강과
학교시설증개축	30,024	6,822	22.7	5.8	50,441	1,558	3.1	교육시설 안 전 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26,133	5,707	4.5	4.9	175,876	9,476	5.4	교육시설 안 전 과

주1) 구성비 : 총 불용액 대비 해당 세부사업 불용액

○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로 예산현액(2,340억 4,900만원)의 10.8%인 252억 9,800만원이 불용된 바,

- **왕십리고등학교**(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하왕십리3동 소재) 신설은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성동학교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비 196억 6,300만원

중 설계비 등 5억 6,100만원을 제외한 191억 200만원(예산현액의 97.1%)을 미집행하였음

〈표 4-6〉 왕십리고 신설 세출예산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목별	전년도 이월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비율
토지매입비	명시이월	14,958	0	0	14,958	100
시설비	명시이월	4,171	27	0	4,144	99.4
	사고이월	534	534	0	0	0
	소계	4,705	561	0	4,144	88.1
합계		19,663	561	0	19,102	97.1

- 동 사업의 예산현액 196억 6,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명시이월: 191억 2,900만원, 사고이월: 5억 3,4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본예산에 19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개발조합 내 이권발생 및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부지매수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014회계연도 중 동일사유로 미집행한 바,
- 동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용액 발생규모가 단일사업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된 2014회계연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감추경 후 사업 추이를 고려하여 신규 편성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했음 것으로 판단됨

- 서울잠신초등학교(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 잠실동 소재) 교실 증축 사업은 학급과밀 해소를 위해 11실의 일반·특별교실을 수직 증축(4층→5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9,600만원 중 설 계비 8,000만원을 제외한 29억 1,6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 2008. 9월 인접 리센츠아파트 재건축 시 34학급, 911명 수용 규모로 재개교한 이래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2014년 현재 50학급 1,614명(학급당 인원수 32.3명)에 이르고, 향후에도 학생수 증가(2018년 1,735명, 학급당 인원수 34.7명)가 예상되어 교실 증축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아파트입주민들의 민원²¹⁾으로 4차의 사업설명회와 3회의 협의회 시행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 추진이 불가능 하여 예산현액의 97.3%, 29억 1,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학교신·증축 지연·취소의 경우, 기존 설립학교의 과밀화, 교육과정 운영 상 어려움, 통학거리의 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만큼, 관계자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이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²²⁾ 사업은 예산현액 5,234억 2,000만원 중 151억 8,400만원(2.9%)의 불용액²³⁾이 발생한 바,

21) 리센츠아파트 입주민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13회, 민원방문 5회, 항의전화, 현수막 설치 등
- 주요 민원사항 : 수직증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 경제적 선보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용에 따른 분진·소음발 생 피해보상 요구 등

22) 누리과정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5세 어린이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23) 2013회계연도(206억 2,500만원, 4.3%) 보다 △54억 4,100만원 감소

- 지원대상 유아수를 추계하는데 유동성이 내재²⁴⁾되어 적정 지원대상 산정에 한계가 있으나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239억 1,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불용액 발생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용액의 규모가 총 불용액(1,172억 9,000만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 중 만3~5세아 보육료는 불용률이 2013회계연도 대비 △3.8%p 감소한 반면, 유아학비는 1.6%p 증가한 바, 향후 지원대상 유아에 대한 정확한 추계, 변동 추이 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7〉 누리과정 지원사업 전년대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연도별	예산현액	지출금액	불용액	
					비율
만3~5세아 유아학비	2014	248,417	242,462	5,955	2.4
	2013	217,006	215,171	1,835	0.8
	증감 (비율)	31,411 (14.5)	27,291 (12.7)	4,120 (224.5)	1.6
만3~5세아 보육료	2014	275,002	265,775	9,227	3.4
	2013	261,202	242,413	18,789	7.2
	증감 (비율)	13,800 (5.3)	23,362 (9.6)	△9,562 (△50.9)	△3.8

24) 누리과정 지원인원의 변동(2013~2014년)

(단위 : 명)

구분	회계연도	예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유아학비	2014 (전분기 대비 증감)	92,399	79,083	89,659 (10,576)	93,007 (3,348)	92,962 (△45)	88,678
	2013 (전분기 대비 증감)	93,104	88,292	94,008 (5,716)	94,433 (425)	94,216 (△217)	92,737
보육료	2014 (전분기 대비 증감)	103,120	104,563	99,907 (△4,656)	98,369 (△1,538)	98,500 (131)	100,335
	2013 (전분기 대비 증감)	113,639	80,989	99,838 (18,849)	95,471 (△4,367)	95,135 (△336)	92,858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교원의 휴직·휴가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채용 사업으로 예산 편성인원(4,368명)과 집행인원(3,849명)의 차이(519명)가 발생하여 예산현액 1,727억 6,000만원의 6.8%인 116억 7,400만원이 미집행된 것임
- 2014년도 제1회 추경(2014. 12)에서 △83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회계연도 중 △52억 8,6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음에도 전체 불용액(1,172억 9,000만원)의 10.0%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감추경 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2013회계연도에도 339억 8,300만원(예산현액 1,923억 3,200만원의 17.7%)이 미집행된 바 있고, 유사 사업인 **계약제직원 인건비**의 경우에도 2014회계연도 불용률이 26.3%로 나타나는 바, 비록 공무원 대체인력 규모 산정의 어려움과 인건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4-8〉 계약제교원·직원 인건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직년회계연도(2013)			소관부서
		비율	구성비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율		
계약제교원 인건비	172,760	11,674	6.8	10.0	192,332	33,983	17.7	예산담당관
계약제직원 인건비	8,381	2,204	26.3	1.8	8,748	2,198	25.1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인건비**는 예산현액 3조 2,563억 7,500만원
의 0.3%인 98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동 사업을 비롯한 공무원인건비²⁵⁾는 예산현액 3조 7,077억 700만
원 중 3조 6,969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지난 회계연
도와 유사한 99.7%로 2012회계연도(집행률 98.3%)보다 점진적
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4-9〉 공무원 인건비 결산 내역('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주1)}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불용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불용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불용액 (비율)
합 계	3,707,707	3,696,911 (99.7)	10,796 (0.3)	3,682,707	3,672,425 (99.7)	10,282 (0.3)	3,625,162	3,562,193 (98.3)	62,969 (1.7)
교원인건비	3,256,375	3,246,573 (99.7)	9,802 (0.3)	3,248,910	3,241,311 (99.8)	7,599 (0.2)	3,252,865	3,197,150 (98.3)	55,715 (1.7)
교육전문직 인건비	42,932	42,218 (98.3)	714 (1.7)	41,263	41,090 (99.6)	173 (0.4)			
지방공무원 인건비	408,400	408,120 (99.9)	280 (0.1)	392,534	390,024 (99.4)	2,510 (0.6)	372,297	365,043 (98.1)	7,254 (1.9)

※ 주1) 2012년은 교원인건비에 교육전문직인건비가 포함됨

25) 교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보전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이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3에 의거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산정²⁶⁾되는 바, 공무원인건비 예산의 과다 편성은 부담금의 과다 집행을 야기하게 됨
- 실제로 2014회계연도의 경우,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였다면 최대 11억 4,200만원의 부담금을 절감²⁷⁾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건비 예산추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표 4-10〉 공무원 부담금 절감액 추정

(단위 : 백만원)

부담금	집행액 (A)	인건비 최종예산액 기준 산출액(B)	인건비 결산액 기준 산출	
			산출액(C)	절감예상액(C-B)
합 계	458,277	455,654	454,512	△1,142
연금부담금	215,297	213,716	213,028	△688
보전금	140,534	139,505	139,057	△448
퇴직수당부담금	100,664	100,664	100,664	-
재해보상부담금	1,782	1,769	1,763	△6

26) 부담금 산정(2014회계연도 기준)

- 연금부담금 : 공무원인건비 중 보수·직급보조비 예산현액×7%
- 보 전 금 : 공무원인건비 중 보수·직급보조비 예산현액×4.557%(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3 2항 및 3항에 의해 선정된 비율로 매년 변경됨)
- 퇴직수당부담금 : 공무원의 명예퇴직, 정년퇴직, 일반퇴직 등에 대한 실소요액
- 재해보상부담금 : 공무원인건비 중 보수·직급보조비 예산현액×0.058%(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2항 및 3항에 의해 선정된 비율로 매년 변경됨)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상의 예산현액을 반영하며, 결산 상 예산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익년도 정산

27) 부담금 절감액 산정방법

- 절감액(11억 4,200만원) = 인건비 최종예산액 기준 부담금 산출액(= 2014회계연도 집행액 ± 2015회계연도 정산 예정액) - 인건비 결산액 기준 부담금 산출액

○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급식운영**은 예산현액 2,920억 8,900만원의 2.4%인 69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주요 사업항목인 **무상급식**의 불용액은 69억 2,600만원으로 추정 시 학생수 감소(△10,062명, 2014.09월 학생수 기준)에 따라 △80억 4,600만원을 감액²⁸⁾한 바 있으나, 장기 결석, 전·출입 등에 따른 학생수 감소(추경 산정기준 대비 △1,484명) 및 급식일수 감소로 추가적인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1〉 무상급식 지원인원

(단위 : 명, 일)

무상급식비		본예산 산정기준		추경산정기준(A) (작성기준일 : 2014. 9.29.)		실 집행인원(B)		증감(B-A)	
급별	설립별	학생수	지원일수	학생수	지원일수	학생수	지원일수	학생수	지원일수
합계		729,000		718,938		717,454		△1,484	
초	공립	441,000	192	433,086	192	432,695	190	△391	△2
중	국립	1,455	180	1,490	180	1,484	179	△6	△1
	공립	215,616	180	213,087	180	213,221	174	134	△6
	사립	70,929	180	71,275	180	70,054	173	△1,221	△7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예산현액 300억 2,400만원의 22.7%인 68억 2,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의 95.2%가 지난 2013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증축비(65억원)가 불용된 것임

28) 학생수 감소에 따른 추정 감액 상세내역(학교 급별·설립별)

- 공립초 : △3,449백만원, ·국립중 : 9백만원, ·공립중 : 3,566백만원, ·사립중 1,022백만원
- 총 계 : △8,046백만원

- 경기상고 기타시설 증축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 종로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²⁹⁾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지하주차장 증축 반대 민원으로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편성 및 이월·불용이 반복³⁰⁾된 바 있고, 2014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65억원 전액 미집행된 것³¹⁾임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261억 3,300만원의 4.5%인 57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5,000만원(4.4%), ‘예산집행잔액’이 54억 5,700만원(95.6%)이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은 없음

〈표 4-1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불용액 발생사유별 구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사유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2014	126,133	5,707	4.5	250	0	0	5,457
		(100)		(4.4)	(0.0)	(0.0)	(95.6)
2013	206,971	10,505	5.1	2,038	339	0	8,128
		(100)		(19.4)	(3.2)	(0.0)	(77.4)

29) 2009. 8. 3. 학교 복합화 및 지하주차장 건설·운영 및 관리협약체결(종로구청, 서울시교육청, 경기상고)

30) 경기상고 기타증축(지하주차장) 사업 추진경과

1. 2011. 8. 5 : 종로구청 65억원 배정 및 본예산 편성 요청→2012 본예산 편성
2. 2012. 5.31 : 민원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2013. 5.30)→2012 예산 미집행 및 2013본예산 재편성
3. 2013. 9. 1 : 민원발생으로 설계용역 중지→2013년 예산 명시이월
4. 2014회계연도 : 민원 해결되지 않아 2013년 명시이월비 전액 미집행

31) 경기상고 기타시설 증축비(65억원) 2015회계연도 중 종로구청에 반납예정

-관련문서 :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2908(2014.11.11.), 종로구청 주차관리과-31252(2014.11.14.)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감소(△0.6%)하였을 뿐 아니라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감소하였는 바, 201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자체예산 절감분인 △669억 8,600만원(본예산 1,102억 6,900만원의 △60.7%)을 감액³²⁾ 조정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소요예산 과소편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편성 사전 조사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의 정밀산출과 사전준비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3〉 계획변경 및 취소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청별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비율	
합 계			310	250	80.6	
1	강서	화곡보건경영고 화장실개선	113	113	100	학교요청 사업취소 (편성액 부족)
2	북부	선덕중 교사지하층방수	84	24	28.9	공사물량 변경 (기 방수공사부분 제외)
3	본청	어린이놀이시설 서울시 반납금	51	51	100	행정상 착오로 미집행
4	강서	덕원여고 건물외벽보수	50	50	100	학교요청 사업취소 (편성액 부족)
5	강서	교남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11	11	100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 완료

32)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검토보고서 p.29

<표 4-13> 시설사업비(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본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안
		소계 (D=A+B+C)	증액 (A)	절감 (B)	성립전 (C)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269	△30,263	1,979	△66,986	34,744	80,006

2)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사업

- 2013회계연도에서 201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편성목 기준 명시이월 41건 1,061억 8,800만원, 사고이월 181건 1,040억 2,500만원으로 총 222건 2,102억 1,300만원이며, 이 중 319억 700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은 15.2%임

〈표 4-14〉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
210,213	106,188	104,025	173,262	71,613	101,648	5,043	31,907	15.2

- 이월사업의 불용률이 전체 불용률(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왕십리고 학교신설, 경기상고 기타시설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미집행이 주요인으로 판단됨

○ 불용률이 50%이상인 이월사업을 검토하면

〈표 4-15〉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률 50%이상 사업내역(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이월구분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사유	소관 부서
					비율		
명시 이월	왕십리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4,958	0	14,958	100	재개발조합 측 사유로 부지매수 협의 불가능	교육 재정과
	경기상고 기타시설증축	6,500	0	6,500	100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 취소	중부교육 지원청
	신규마이스터고 기반조성	2,000	10	1,990	99.5	기숙사 증축예산(교육청 대응투자비) 미확보로 개교연 기	진로직업 교육과
	왕십리고 학교신설 (건설비)	4,171	27	4,144	99.4	부지매수 지연으로 건설 공사미집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환경개선	1,455	51	1,404	96.5	제2교육연수원(구, 영동중 가 동) 용도변경 논의(서초 문화 예술고 확대 사용) 등으로 공사 발주 지연	초등 교육과
사고 이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217	108	109	50.1	청사 이전(예정) 부지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 고시 지연에 따른 도시 계획변경결정 용역 지연	총무과

○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신규마이스터고 기반조성 사업은 서울도시
과학기술고가 마이스터고(해외건설·플랜트 분야)로 지정되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나 예산현액 20억원 중 지질조사 및
측량비 1,000만원을 제외한 19억 9,000만원을 미집행한 바,

- 동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시교육청이 투자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원 중 2013년 교부된 20억원의 특별교

부금(전액 명시이월)을 제외한 28억원(국토교통부 9억원, 서울시 교육청 19억원 투자)이 대응편성 되지 못하여 개교시기를 당초 (2015.03.01.) 보다 1년 연기(2016.03.01.)함에 따라 예산현액의 99.5%, 19억 9,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초등교육과 소관(구, 교원정책과 소관) 직속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제2교육연수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14억 5,500만원)의 96.5%, 14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2013.12월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전액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제2교육연수원 예정지 용도변경논의³³⁾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예산현액의 96.5%가 불용된 것임

○ 총무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이전을 위해 이전지인 구 수도여고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학교 부지→공공청사)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700만원 중 1억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 2013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용역기간 추가 소요 및 도시계획 입안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 ① 용역업체의 파산, ② 용산구청의 용산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지연 등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재차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33) 행정관리담당관-2115(2015.03.12.)

서울특별시 제2교육연수원 설치 : 제2교육연수원은 구 영동중학교 교사동(가동) 설치예정지로 현재 동일부지 내 위치한 서초문화예술고등학교의 확대사용과 관련한 용도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교육감 주재 관련부서장 회의(2014.12.11.)에서 원안대로 추진 결정됨

-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이월액의 특성 상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감추경이 불가능하므로,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사고이월 신청 및 승인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된 사업은 미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4회계연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다음 21개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화곡보건경영고 화장실 개선**(예산현액 1억 1,300만원), **덕원여고 건물외벽보수**(예산현액 5,000만원) 사업은 해당학교가 요구하는 총 소요예산의 일부 금액만이 편성되어, 사업비를 반납함으로써 전액 미집행되었음

- 교육재정과 소관 **일시차입금 관리**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제6조에 의거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적기집행하기 위해 부족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 이자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연도 중 일시차입 없이 자금운용하여 예산현액 1억 8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 중 **방송중 설치 관련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2015년 3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수요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나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여 예산현액 1억원 전액 불용하였음

-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 중 **지방공무원 봉사활동연수 사업**은 해외 개발도상국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월호 참사 등의 사유로 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미집행된 것임

- 불용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불용액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예산현액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 중 일부는 사전 조사의 소홀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라고 판단됨

- 또한 예산미집행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시 감액 조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교육재정 여건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되어야 할 것임

〈표 4-16〉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소관
1	학교신증설	가칭)왕십리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4,958	14,958	교육재정과
2	학교시설증개축	경기상고 복합화시설	6,500	6,500	교육시설 안전과
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곡보건경영고 화장실개선	113	113	교육시설 안전과
4	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상환	108	108	교육재정과
5	대안교육운영지원	방송중 설치 관련 학술연구용역비	100	100	학생생활 교육과
6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봉사활동연수	80	80	총무과
7	학교시설증개축	동자초 강담검체육관 증축	80	80	교육시설 안전과
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어린이놀이시설 서울시반납금	51	51	교육시설 안전과
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덕원여고건물외벽보수	50	50	교육시설 안전과
10	학교신증설	화일초 병설유치원 증설	46	46	학교지원과
1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광진학교 장애인 편의시설개선	45	45	교육시설 안전과
12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개선 정책연구	23	23	학교지원과
13	학교급식환경개선	선일여고조리실 바닥 등 보수	20	20	체육건강과
1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청파초 피난계단설치	20	20	교육시설 안전과
15	스마트교육지원	연구학교운영비(교대부초)	17	17	교육혁신과
1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남학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0	10	교육시설 안전과
17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고교홍보사이트 개편기타용역비	10	10	학교지원과
18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영향평가	10	10	학교지원과
19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대왕초 토지매입비	7	7	학교지원과
20	학교급식환경개선	노일초 급식기구 연결 도시가스공사	6	6	체육건강과
21	행정서비스관리	민원제도개선	1	1	총무과

다.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³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에 총 1건, 398억 9,5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한 바, 지난 2013회계연도(총 45건, 2,833억 7,600만원)와 비교할 때 44건, 2,434억 8,100만원이 감소한 것임

〈표 4-17〉 이체 발생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발생건수	증	감
2014	1	39,895	△39,895
2013	45	283,376	△283,376
2012	2	365	△365

-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를 검토하면,
 - 2014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³⁵⁾」에 근거하여 방과후학교운영사업 내 초등돌봄교실운영이 평생진로교육국

34)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3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4. 2. 24. 개정) 제8조(교육정책국)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3.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생활교육과에서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로 분장사무가 변동되어 이체된 것으로,

- 통상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 신설·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이체가 이루어졌었으나, 금년에는 조직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초등돌봄교실 업무의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이체된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³⁶⁾」 제2조에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³⁷⁾에는 조례의 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이 직무권한의 부서간 변경을 의미하는 개정을 한 경우 이체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음

〈표 4-18〉 2014 회계연도 이체 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이체액		예산부서	이체일자
	증	감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39,895	0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3. 24.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0	39,895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3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7)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 2011. 3) p211

조직 관련 규칙 개정이 직무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규칙이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예산의 이체 대상이 됨

라. 이용 관련

-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³⁸⁾의 단서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7조³⁹⁾에 열거된 공무원 보수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의 경우, 이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표 4-19〉 이용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4	—	—	—	
2013	3	33,783	33,783	교원연구비 부족분 충당
2012	—	—	—	

- 38)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39)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2-1) p.3
예산총칙 제7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마.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40)에 의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에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48건, 239억 6,700만원이 전용된 바, 이는 서울시 교육청 전체의 예산현액(7조 9,151억원)의 0.3%에 해당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건수는 △45건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82억 5,800만원(52.5%)이 증가하였음

〈표 4-20〉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2014	2013	2012
건 수	48	93	93
전용액	23,967	15,709	57,160

- 특히, 예산전용이 4/4분기에 전체 전용액의 69.6%가 집중된 27건, 166억 8,800만원이 발생된 바, 매 회계연도 마다 유사한 현상이 반복 발생되고 있어, 연도 말 사업별 예산 과부족 문제를 예산전용으로 상쇄시킨 것은 아닌지 개별 전용사례에 대해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1〉 분기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 수	48	4	7	10	27
전용액	23,967	745	3,023	3,511	16,688
전용률	100.0	3.1	12.6	14.7	69.6

40)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전용액 5억원 이상 발생 사례를 검토하면, 2014회계연도에는 총 9건, 223억 8,500만원으로 전체 전용액(239억 6,700만원)의 93.3%에 41) 해당함.

○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무원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에서 2회에 걸친 전용을 통하여 52억 8,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 '14년 12월 15일에는 12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⁴²⁾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제교원인건비로부터 20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14년 12월 23일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제교원인건비로부터 32억 2,6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4-22〉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 관련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전 용 사 유	전용일자
			증	감		
계약제교원 인건비	인건비	146,671	0	2,060	2014. 12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충당	12.15.
지방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11,388	339	0		
계약제교원 인건비	인건비	146,671	0	3,226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	12.23.
지방공무원 인건비	민간이전	58,872	2,087	0		

41) 5억원 이상의 전용은 2012회계연도 총 17건, 174억 7,800만원 발생한 것이 비해 6건이 증가하였고, 전용금액도 942억 2,600만원 증가한 것임

42) 직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직무수행경비를 말함(「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동 전용사례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⁴³⁾의 단서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총칙⁴⁴⁾에서 공무원 보수(총액 인건비 포함)와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당해연도의 예산서 중 총칙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지방공무원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용이 우선 고려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전용 사례 중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법정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20억 8,700만원을 전용해 왔으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는 세출 예산에 우선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원부족으로 전용해 온 바, 금번 전용은 세출예산의 비정밀한 산출을 희석시키려는 수단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3) 「지방재정법」 제4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44)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7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 총무과 소관 **교원인건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⁴⁵⁾에 따라 교육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 중 전통시장상품권을 각급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예산을 교부하고자 복리후생비 27억 4,300만원을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것임

- 그러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지난 2011년도 말 개정된 것으로서, 2013회계연도 맞춤형복지사업 추진 시에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을 신설하여 전용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이미 직전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전용된 사례가 있어 다음 회계연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편성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됨

〈표 4-23〉 맞춤형복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에 따른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전 용 사 유	전용일자
			증	감		
교원인건비	학교회계 전출금	0	2,743	0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및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요 예산의 학교 교부를 위한 목별 예산 조정	5.13.
	복리후생비	31,140	0	2,743		

4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4.1.22.) p569 제10장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지원**은 법정지급대상인 장애학생 치료지원비(굳센카드)의 결재액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일사업 내 목별 조정과 동 부서 소관인 특수교육운영,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에서 총 25억 2,3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46)에 따라 특수학교(학급),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월 12만원씩,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실비로 지원하는 것임

- 다만, 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안교육운영지원은 학교회계전출금(34억 6,900만원)의 32.2%인 11억 1,900만원이 전용된 것이며, 특수교육운영은 학교회계전출금(88억 5,300만원)의 14.1%인 12억 5,400만원이 전용된 바, 동 사업에 전용해준 해당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제대로 달성하였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표 4-24〉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 관련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현액	전용액		전 용 사 유	전용일자
			증	감		
특수교육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8,853	0	1,254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부족분을 충당	9. 4.
특수교육복지 지원	운영비	8,151	1,254	0		
대안교육운영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3,469	0	1,119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부족분을 충당	9. 4.
특수교육복지 지원	운영비	8,151	1,119	0		
특수교육복지 지원	유형자산	240	0	150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별 예산 조정	9. 4.
	운영비	8,151	150	0		

〈표 4-25〉 주요 전용사업(5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사유	전용일자
			증	감		
교원인건비	민간이전	478,594	10,497	0	교원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별 예산 조정	12.23.
	인건비	2,718,936	0	10,497		
지방공무원인건비	인건비	325,948	1,139	0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	12.23.
	민간이전	58,872	2,087	0		
계약제교원인건비	인건비	146,671	0	3,226		
지방공무원인건비	인건비	325,948	1,721	0	2014. 12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충당	12.15.
	직무수행경비	11,388	339	0		
계약제교원인건비	인건비	146,671	0	2,060		
교원인건비	학교회계 전출금	0	2,743	0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및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요 예산의 학교 교부를 위한 목별 예산 조정	5.13.
	복리후생비	31,140	0	2,743		
특수교육복지지원	운영비	8,151	1,254	0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부족분을 충당	9. 4.
특수교육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8,853	0	1,254		
특수교육복지지원	운영비	8,151	1,119	0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부족분을 충당	9. 4.
대안교육운영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3,469	0	1,119		
특수교육복지지원	운영비	8,151	150	0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별 예산 조정	9. 4.
	유형자산	240	0	150		
교원인사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19,031	714	0	교무행정지원사의 계약직근로자 법정부담금(국민연금)을 학교에 교부하기 위한 목별 예산 조정	8.28.
	민간이전	778	0	714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비	415	622	0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추진하기 위한 목별 예산 조정	2.25.
	민간이전	5,650	0	622		

바.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47)에 의거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20건, 142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율은 0.2%이며, 직전 회계연도(41건, 1,061억 8,800만원) 대비 △21건, △918억 8,900만원 감소하였음

〈표 4-26〉 명시이월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		
		건수	금액	비율
2014	7,915,133	20	14,299	0.2
2013	8,256,035	41	106,188	1.3
2012	8,006,141	5	7,921	0.1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142억 9,900만원)의 51.6%, 73억 8,700만원, ② 토지매입 지연 21%, 30억원, ③ 사업추진 지연 20%, 28억 5,600만원, ④ 기타 7.4% 10억 5,600만원임

47)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4-27〉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특별교부금)	토지매입 지 연	사업추진 지 연	기타
건 수	20	14	1	2	3
이월액	14,299	7,387	3,000	2,856	1,056
비율	100	51.6	21.0	20.0	7.4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14건, 73억 8,700만원)사업은 회계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현액 전액을 명시이월 승인요청하여 우리 의회가 의결한 바 있음

〈표 4-28〉 2014회계연도말 교부로 명시이월된 특별교부금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교부일	세부사업명	건수	명시이월액
총합계		14	7,387
2014.12.11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2	247
2014.12.15	특수교육운영	1	1,018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1	138
	학교급식환경개선	3	3,60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	1,962
2014.12.1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	415

○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1건, 30억원)은 교육재정과 소관
거여고 신설 토지매입비로 예산현액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음

- 거여고는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내 36학급 규모로 2016. 3월
개교예정이었으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연 및 신설 예정
부지 내 주둔 중인 군부대의 이전 지연으로 개교시기를 2017. 3월로
조정하고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한 것임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2건, 28억 5,600만원) 중,

- 성북교육지원청 소관 수송초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강북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강북구 번1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주차장과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학교시설복합화 사업)⁴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북구청과 협
의기간 지연 및 설계기간 장기소요로 회계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예산현액 32억원 중 공사비 26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5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개소 추진이 지연된 종로·강북·
관악구 센터(2015년도 개소)와 양천구 센터(2014년도 4분기
개소)의 운영비 1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48) 수송초 복합화 사업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4길 14 서울수송초등학교 내
- 시설개요 : 연면적 9,000㎡ 내외(지하 2층~지상 4층)
 - 지하주차장, 급식실·학생식당, 정보센터, 체육관·생활체육시설
- 총 공사기간 : 24개월
- 총 공사소요액 : 152억 1,300만원
 - 교육청 40억 3,200만원, 서울시 77억 4,700만원, 강북구 34억 3,400만원

- 기타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3건, 10억 5,600만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방일초 외 2개교의 석면해체제거 사업** (체육건강과 소관)으로 총 소요액보다 교부액이 적어 부족예산 확보 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한 것임

- 명시이월이 의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당해연도 예산액과는 달리 감추경을 할 수 없는 바,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이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49)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82건, 417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7조 9,151억 3,300만원)의 0.5%이며, 지난회계연도(181건, 1,040억 2,500만원)보다 △99건, △622억 9,600만원 감소하였음

〈표 4-29〉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사고이월		
		건수	금액	비율
2014	7,915,133	82	41,729	0.5
2013	8,256,035	181	104,025	1.3
2012	8,006,141	365	202,428	2.5

49)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감소한 것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경 시 사고이월의 주요 대상인 시설사업비(2014년 사고이월비의 98.1%)⁵⁰⁾ 중 학교신·증설 및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또는 추가재원 소요사업 △958억 2,400만원을 감액⁵¹⁾조정한 결과로 판단됨

〈표 4-30〉 시설사업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A)	다음연도 사고이월		
			이월액(B)	이월률(B/A)	구성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 총 사고이월액)
2014	세출결산액	7,915,133	41,729	0.5	100
	시설사업비결산액	450,622	40,925	9.1	98.1
2013	세출결산액	8,256,035	104,025	1.3	100
	시설사업비결산액	778,344	98,413	12.6	94.6
증감	세출결산액	△340,902	△62,296	△0.8	
	시설사업비결산액	△327,722	△57,488	△3.5	

50) 시설사업비 : 본청시설관리, 지역교육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 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 등 7개 사업

51)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22
 시설사업비의 경우, 학교신·증설 및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또는 추가재원 소요사업의 집행률 대부분 유보하여 본예산(2,674억 1,400만원)의 △35.8%, △958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이하 생략)

1) 사고이월 발생사유

-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추경편성 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417억 2,900만원)의 37.9%, 158억 3,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② 계약기간 미도래 26.4%, 110억 1,200만원, ③ 사업추진 기간부족 16.9%, 70억 5,200만원, ④ 동절기 공사 중지 9.7%, 40억 3,700만원, ⑤ 공사(납품) 지연 8.7%, 36억 3,600만원, ⑥ 기타 0.4% 1억 5,800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4-31〉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추경편성 사 업	계약기간 미 도 래	사업추진 기간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납품) 지연	기타
건 수	82	44	9	7	10	9	3
이월액	41,729	15,834	11,012	7,052	4,037	3,636	158
비율	100.0	37.9	26.4	16.9	9.7	8.7	0.4

①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표 4-32〉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재원)
				비율	
고척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500	105	1,365	91.0	서울시 전입금 (교육지원 사업비)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070	0	1,070	100.0	
신월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450	61	1,385	95.5	
창덕여중 리모델링공사	2,300	716	1,180	51.3	특별 교부금

- 체육건강과 주관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 중

고척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예산현액(15억원)의 91.0%인 13억 6,500만원,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예산현액(10억 7,000만원) 전액, 신월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예산현액(14억 5,000만원)의 95.5%인 13억 8,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상기 3개 사업은 서울시의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중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⁵²⁾계획 의거

52)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1832, 2014.02.27.)』 에 의한 교육지원사업

- 대상 : 총 44개교(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5개교)
- 총 지원액 : 88억 7,600만원

지원 받은 사업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5개월 여가 경과한 6월 초 예산을 배정⁵³⁾하여 추진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학사일정 고려,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음

- 2013.11.06. 교육지원사업의 최종계획(안)이 확정되고 2014.02.27.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예산교부(2014.05.15.) 및 예산편성(2014.06.03.)이 지연되어 장기간의 설계·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증축공사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 학생의 안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우선해야 하는 학교공사의 특성을 감안하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향후에는 연초 예산교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임

53) 2014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교육실무협의회 개최('13.7~10월, 5차)
 - '14년도 교육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사업 및 규모 등 협의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13.10.16)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원안가결)
- '14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최종계획(안) 확정('13.11.06)
 - 대상 : 44개교, 지원액 : 88억 7,600만원
- '14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예산 확정('13.12.20)
 -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심의·의결
- '14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14.02.27) 및 서울시교육청 통보('14.03.06)
- 서울시 예산교부('14.05.15)
- 서울시교육청 사업집행('14.06~)
 -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우선확정('14.06.03) 및 예산배정

- 교육혁신과 소관 **창덕여중 리모델링 공사**는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서울미래학교 설립⁵⁴⁾사업의 일환으로 대상교인 창덕여중 교사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나, 학교와의 설계협의 지연으로 공사계약이 늦어져 예산현액 23억원 중 설계비 등을 제외한 1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②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표 4-33〉 계약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비율	총소요액	총 추진기간 (설계~공사준공)	
거여초 교사개축	5,300	4,267	1,032	19.5	22,606	2012.12~2016.04
장원초 학교신설	2,170	616	1,540	71.0	27,330	2014.04~2016.02
한울중(이전)신설	2,900	485	2,415	83.3	16,900	2014.06~2016.02
송신초(이전)신설 (건설비)	6,413	1,890	4,522	70.5	50,007	2013.07~2015.08

54) 서울미래학교 설립계획

- 개교(예정) : 2016년 3월
- 장소 : 창덕여자중학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 운영계획
 - 2015년 : 중학생 대상 미래학교 연구학교 운영
 - 2016년 : 중학생 대상 서울미래학교 운영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거여초 교사 개축**은 예산현액(53억원)의 19.5%인 10억 3,200만원, 학교지원과 주관 **학교신·증설** 사업 중 **장원초 학교신설**은 예산현액(21억 7,000만원)의 71%인 15억 4,000만원, **한울중(이전) 신설**은 예산현액(29억원)의 83.3%인 24억 1,500만원, **송신초(이전) 신설**은 예산현액(64억 1,300만원)의 70.5%인 45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상기 4개 사업은 2개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⁵⁵⁾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회계연도에 체결한 차수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 비록 서울시교육청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 회계연도 소요액만을 예산편성·집행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결여 혹은 사업비의 우선 확보 목적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③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표 4-34〉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비율	
승신초(이전)신설(토지매입비)	15,037	9,933	5,104	33.9	본예산
고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1,591	0	1,585	99.6	전년도 명시이월

- 교육재정과 소관 **승신초 (이전)신설(토지매입비)** 사업은 2015년 9월 왕십리뉴타운 1구역 내 개교예정인 승신초(33학급) 부지 매입비로 예산현액 150억 3,700만원 중 51억 4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소유권이전등기가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여 2015년도 중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⁵⁶⁾으로 확인됨

- 체육건강과 소관 **고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9,100만원)의 99.6%인 15억 8,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56) 승신초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현황(교육재정과-2384 발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 및 납부현황					재원
	계약금(10%)	1차중도금(30%)	2차중도금(40%)	잔금	계	
일자	2014.06.30	2014.09.30	2014.12.10	소유권이전 등기 후	.	·2013년 명시이월 : 17,675 ·2014년 본예산 : 15,037
금액	3,451	10,353	13,803	6,902	34,509	·2015년 본예산 : 1,797

- 2013년 수립된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계획⁵⁷⁾에 의거 특별교부금⁵⁸⁾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실·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을 병행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4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체육관 증축 설계비가 추경 시 감액됨에 따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우선 추진하고자 학교와의 협의, 검토기간 등이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11월에 시행되었기에 사고이월되었음

○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총 7건 중 예비비로 집행된 1건을 제외한 6건은 본예산 및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⁵⁹⁾인 바, 사업부서의 안정적 재원확보 의지는 이해되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당해연도 실행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과 충실한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7)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 추진계획 변경(교육시설과-3721, 2013.05.28.)

58) 고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비

· 2013회계연도 특별교부금 17억 4,400만원(2013. 9.26 우선확정)

→20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 15억 9,100만원(공사비)

59)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예산구분
업무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재구축 용역	445	106	23.8	본예산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방안 연구	21	11	50.0	본예산
혁신미래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20	10	50.2	본예산
고척중 급식실및학생식당증축	1,591	1,585	99.6	전년도 명시이월
송신초(이전) 신설	15,037	5,104	33.9	본예산
명신초 장애인편의시설증축공사	180	51	28.5	본예산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200	186	92.8	예비비

④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업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표 4-35〉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율
예일디자인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2,695	675	2,020	75.0

- 체육건강과 소관 **예일디자인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지하층에 위치한 급식실의 이전 및 3개교(예일여중, 예일여고, 예일디자인고) 공동급식 운영을 위한 학생식당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9,500만원 중 설계비 및 공사 기성금 6억 7,500만원을 제외한 20억 2,000만원이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음

⑤ **공사(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공사(납품)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표 4-36〉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율
신남중 지하주차장 증축	1,520	327	1,185	77.9

- 강서교육지원청 소관 **신남중 지하주차장 증축** 사업은 예산현액(15억 2,000만원)의 77.9%인 11억 8,5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공사 중 우천, 터파기 결과 암반 발견, 학교 측 요구사항 반영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2) 반복적 이월 발생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중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 이월이 발생한 사례를 검토하면

〈표 4-37〉 반복적 이월발생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완료예정)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사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거여초 교사개축 (2016.04)	2014	건설비	5,300	8,453	7,415	-	1,032 (12.2)	6
	2013	건설비	3,200	4,232	527	-	3,153 (74.5)	-
	2012	건설비	638	638	4	-	480 (75.2)	154
송신초 (이전)신설 (2015.08)	2014	토지 매입비	15,037	32,711	27,607	-	5,104 (15.6)	-
		건설비	6,389	10,067	4,785	-	5,282 (52.5)	-
	2013	토지 매입비	17,721	17,721	47	17,674 (99.7)	-	-
		건설비	4,066	4,066	432	3,634 (89.4)	-	-
가재울초 신설 (2016.03)	2014	토지 매입비	-	20,000	20,000	-	-	-
		건설비	2,000	5,133	4,857	-	181 (3.5)	95
	2013	토지 매입비	20,000	20,000	-	20,000 (100)	-	-
		건설비	3,300	4,022	886	-	3,133 (77.9)	3
	2012	토지 매입비	39,133	39,133	-	-	-	39,133
		건설비	1,056	1,056	269	-	722 (68.4)	65

※ 주1. (괄호)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

- 교육시설안전과 주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거여초 교사개축**, 학교지원과 주관 **학교신·증설** 사업 중 **승신초(이전)신설**, **가재울초 신설사업**으로 최초 편성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반복적 이월이 발생한 바,
 - 예산의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지방재정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차인잔액(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비, 보조금잔액, 지방채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바,
-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256억 9,600만원으로 이 전회계연도(884억 9,400만원) 보다 42.0%, 372억 200만원이 증가된 것임

〈표 4-38〉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 세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본예산	추경
2014	125,696	-	125,696
2013	88,494	250,000	△161,506 ⁶⁰⁾
2012	304,384	150,000	154,38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⁶¹⁾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입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60)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경시 감액 :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교부금 및 서울시 전입금 감소

61)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 회계연도별 결산 후 발생 예정인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5년도 본예산에는 2014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반영하지 않았음
- 그 결과 금번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재원으로 편성되어 201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누리과정 보육료의 부족분 및 긴급재정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됨

〈표 4-39〉 최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최종예산 (A)	7,704,920	8,045,686	7,830,134
전년도이월액 (B)	210,213	210,350	176,007
예산현액 (C=A+B)	7,915,133	8,256,036	8,006,141
세입결산액(수납액) (D)	7,925,316	8,171,202	8,056,769
세출결산액(지출액) (E)	7,741,815	7,872,251	7,465,629
잉여금(차인잔액) (F=D-E)	183,501	298,951	591,140
명시이월액	14,299	106,188	7,921
사고이월액	41,729	104,026	202,428
계속비	0	0	0
보조금집행잔액	1,777	243	311
지방채상환	0	0	76,096
순세계잉여금	125,696	88,494	304,384

자. 지방교육채 관련

- 2014회계연도 지방채 현재액은 3,73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112억 2,100만원 보다 62억 400만원(19.9%) 증가한 바,

〈표 4-40〉 지방교육채 발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발행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발행액	소멸액	증감액	
합 계	311,221	242,143	△180,139	62,004	373,225
09 교육여건개선	180,139	-	△180,139	△180,139	-
13 학교신설	131,082	-	-	-	131,082
14 학교신설 등	-	59,514	-	59,514	59,514
14 공자기금 지방채 차환	-	182,629 ⁶²⁾	-	182,629	182,629

- 증감요인을 검토하면,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 595억 1,400만원을 발행하였고,
- 지난 2009년도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4.85%(고정금리)로 차입한 2,536억 3,200만원 중 미상환잔액 1,801억 3,900만원을 저금리(3.18%) 지방채로 차환하여 증감된 것임
- 차환으로 원금상환 시기가 당초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매년 한정된 세출재원을 고려할 때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될 것으로 검토됨

62) 2014 공자기금 지방채 차환

182,629백만원 = 180,139백만원(09 교육여건개선 상환잔액) + 2,490백만원(이자)

차. 기타 검토의견(사립학교 법정부담금)

- 2014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⁶³⁾학교(특수학교 제외) 271교⁶⁴⁾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618억 4,700만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28.0%인 173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부담률 29.4%대비 1.4%p 감소하였음

〈표 4-42〉 사립 중·고 법인의 법정부담금 현황('14~'12학년도)

(단위 : 개교, 백만원, %)

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 학교 수	법정부담금 총액		
		법정부담금 소요액(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B/A)
2014	271	61,847	17,304	28.0
2013	271	60,159	17,663	29.4
2012	282	61,712	21,257	34.4

〈표 4-43〉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14~'12학년도)

(단위 : 개교, %)

학년도	지원대상 학교			전액미부담	일부부담	전액 부담
	계	중학교	고등학교			
2014	271	107	164	26 (9.6)	205 (75.6)	40 (14.8)
2013	271	107	164	21 (7.7)	207 (76.4)	43 (15.9)
2012	282	107	175	28 (9.9)	197 (69.9)	57 (20.2)

63) 재정결함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사립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은 당해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

64) 총 309개교의 사립 중·고등학교 중 38개교(국제중 2교, 특목고 10교, 자사고 25교, 일반고 1교(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 제외

- 사학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⁶⁵⁾ 즉,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 감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은 물론 법인의 재산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 등도 검토하여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재무제표(재무회계결산)

가.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⁶⁶⁾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5-1〉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자산 총계	13,594,604	100.0	13,611,890	100.0	△17,286
I. 유동자산	386,937	2.8	380,510	2.8	6,427
II. 투자자산	267,877	1.9	268,363	1.9	△486
III. 유형자산	12,932,200	95.1	12,957,567	95.1	△25,367
IV. 무형자산	2,896	0.0	2,708	0.0	188
V. 기타비유동자산	4,694	0.0	2,742	0.0	1,952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594,604	100.0	13,611,890	100.00	△17,286
부채 총계	1,321,559	9.7	1,305,548	9.59	16,011
I. 유동부채	76,780	0.5	77,940	0.5	△1,160
II. 장기차입부채	1,243,739	9.1	1,226,097	9.0	17,642
III. 기타비유동부채	1,040	0.0	1,511	0.0	△471
순 자산	12,273,045	90.2	12,306,342	90.41	△33,297
I. 고정순자산	11,644,850	85.6	11,691,936	85.9	△47,086
II. 일반순자산	628,195	4.6	614,406	4.5	13,789

66) 「지방재정법」

-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14회계연도말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자산은 13조 5,946억원으로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95.1%, 12조 9,322억원이며,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2.8%, 3,869억원이고, 그 밖에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나머지 (2.0%)에 해당함

○ 자산의 증감을 검토하면, 직전회계연도말(13조 6,118억원)보다 172억 (0.1%) 감소한 바,

- 주요 증가사유는 유동자산 중 미수채권인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⁶⁷⁾이 지난 회계연도보다 1,298억원 증가하였고, 유형자산 중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 1,144억원, 건물 3,284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기타비유동 자산 중 장기임차보증금이 20억원 증가한 것임

- 감소 사유는 유동자산 중 현금과 예금이 1,154억원, 미수제재금수익이 43억원, 단기임차보증금 21억원이 감소하였고,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이 2,634억원이 감소하였고, 감가상각누계액이 2,534억원이 증가한 것임

67) 미수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 1,836억원(전년대비 1,298억 증)

□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
지방교육세 전입금	1,254,246	1,111,703	142,543	1,143,444	1,125,047	18,396
시도세 전입금	947,249	906,114	41,134	895,791	860,312	35,478
담배소비세 전입금	244,041	244,041	0	240,307	240,307	0
합 계	2,445,536	2,261,858	183,677	2,279,542	2,225,666	53,874

※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2014회계연도 선수금 1,808백만원 미포함

- 감소가 가장 큰 유형자산에 대해 검토하면, 취득원가(16조 1,936억원)는 직전회계연도(15조 9,655억원) 대비 2,281억원(1.4%)이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누계액은 이보다 더 많은 2,534억원(8.4%)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는 기말잔액⁶⁸⁾이 253억원 감소한 것임
- 유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⁶⁹⁾을 하고 있으며,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인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누계액도 증가하므로 결국 부채가 동일한 경우에도 순자산이 불가피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표 5-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감가상각누계액 증 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합 계	16,193,602	3,261,403	15,965,532	3,007,965	253,439
건 물	7,233,046	1,766,505	6,904,571	1,587,284	179,221
구축물	264,402	162,797	257,881	154,567	8,230
기계장치	288,225	221,884	284,330	210,955	10,929
교육·연구용기자재	27,480	21,135	26,379	17,843	3,292
집기비품	1,330,480	1,072,049	1,299,024	1,022,299	49,750
차량운반구	25,155	17,031	23,552	15,014	2,017
토 지	6,747,908	—	6,633,438	—	—
도 서	59,441	—	55,662	—	—
입 목	42,126	—	41,886	—	—
박물관유물	8	—	8	—	—
건설중인자산	175,274	—	438,744	—	—
기타의유형자산	50	—	49	—	—

68) 유형자산 기말잔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69)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내용연수 동안 사용시 당해연도에 발생된 가치감소분
-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해 실시

○ 2014회계연도말 **총부채는 1조 3,215억원**으로 BTL사업 상환액,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한 지방채인 장기차입부채가 1조 2,437억원, 94.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동부채가 767억원(5.8%)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10억원(0.1%)에 해당함

〈표 5-3〉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부채총계	1,321,559	100.0	1,305,548	100.0	16,010
I. 유동부채	76,780	5.8	77,940	6.0	△1,160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1,776	0.1	244	0.0	1,533
2. 미지급이자비용	680	0.1	2,705	0.2	△2,024
3. 수업료선수금 ⁷⁰⁾	23,118	1.7	24,611	1.9	△1,493
4. 담배소비세전입금선수금	1,808	0.1	1,056	0.1	753
5. 임대료선수금	335	0.0	389	0.0	△54
6. 사용료선수금	972	0.1	871	0.1	101
7. 자산매각선수금	2,073	0.2	6,971	0.5	△4,898
8. 유동성민자리스부채 ⁷¹⁾	43,610	3.3	39,534	3.0	4,077
9. 세외예수금	2,403	0.2	1,559	0.1	845
II. 장기차입부채	1,243,739	94.1	1,226,097	93.9	17,642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373,225	28.2	131,082	10.0	242,143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0	-	180,140	13.8	△180,140
3. 민자리스부채 ⁷²⁾	870,513	65.9	914,875	70.1	△44,361
III. 기타비유동부채	1,040	0.1	1,511	0.1	△471
1. 퇴직급여충당부채	842	0.1	1,211	0.1	△369
2. 장기세외예수금	197	0.0	300	0.0	△102

70) 수업료선수금 : 학교회계는 3월에 개시하고 다음해 2월말로 종료하므로 2014년 4/4분기 수업료에는 2015년 1, 2월분 수업료(선수금)를 포함하고 있음

71) 유동성민자리스부채 :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한 시설과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한 2015년 원금상환액(버들초 외 140개교)

72) 민자리스 부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한 시설과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지급 기한 1년을 초과(2014.12.31. 기준)하는 임차료

○ 부채의 증감을 검토하면, 직전회계연도말(1조 3,055억원)보다 160억원 (1.2%) 증가하는 바,

- 주요 증가사유는 유동부채 중 유동성민자리스부채가 40억, 장기차입 부채 중 장기금융기관차입금 2,421억원, 보조금반환미지급금 15억원 등이며,
- 감소 사유는 유동부채 중 미지급이자 20억원, 수업료선수금 14억원, 자산매각선수금 48억원,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1,801억원, 민자리스부채 443억원임
- 부채의 94.1%가 장기부채인 바,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은 기존의 '13 학교신설 1,310억원에 '14 학교신설 595억원과 '09 교육여건개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액 1,826억원이 증가하였고,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은 상환하여 1,801억원 전액이 감소한 것임

〈표 5-4〉 차입금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내역	금액	차입처
유동부채	유동성민자리스부채	BTL 2015년 상환금액	43,610	BTL
장기차입부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학교신설 등을 위한 금융채	373,225	농협
	민자리스부채	BTL 2016년 이후 상환금액	870,513	BTL
계			1,287,349	

- 교육청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10.7%로서 전년도 말 대비 0.1% 증가하였고, 이는 2014회계연도 신규차입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762억원이 증가한 바,
- 부채비율은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원리금의 상환 등 장기차입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5-5〉 부채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자산(A)	부 채(B)	부채비율(B/A)	직전연도 대비증감
2014	12,273,045	1,321,559	10.7	0.1
2013	12,306,342	1,305,548	10.6	0.3
2012	12,209,740	1,262,643	10.3	△0.8

-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2조 3,063억원)보다 △332억원(0.2%) 감소한 12조 2,730억원으로
- 순자산 주요감소사유는 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72억원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채도 직전회계연도보다 160억원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나.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표 5-6〉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	7,791,395	100.0	7,836,734	100.0	△45,339
I. 이전수익	7,414,932	95.1	7,479,798	95.4	△64,866
중양정부 이전수익	4,616,847	59.2	4,835,633	61.7	△218,78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669,424	34.2	2,466,196	31.4	203,228
기타이전수익	128,661	1.6	177,969	2.2	△49,308
II. 자체수익⁷³⁾	170,325	2.1	185,394	2.3	△15,069
III. 기타수익⁷⁴⁾	206,138	2.6	171,542	2.1	34,596
비용 총계	7,824,692	100.0	7,740,133	100.0	84,559
I. 인적자원운용	3,898,927	49.8	3,876,110	50.0	22,817
II. 교수-학습활동지원	341,929	4.3	422,807	5.4	△80,878
III. 교육복지지원	840,867	10.7	795,134	10.2	45,733
IV. 보건/급식/체육활동	309,763	3.9	383,191	4.9	△73,428
V. 학교재정지원관리	1,568,703	20.0	1,585,928	20.4	△17,225
VI. 학교교육여건개선	33,750	0.4	50,501	0.6	△16,751
VII. 평생교육	12,460	0.1	13,529	0.1	△1,069
VIII. 직업교육	3,673	0.0	4,885	0.0	△1,212
IX. 교육행정일반	64,697	0.8	46,555	0.6	18,142
X. 기관운영관리	36,786	0.4	39,332	0.5	△2,546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4,269	1.0	88,226	1.1	△3,957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⁷⁵⁾	628,868	8.0	433,935	5.6	194,933
운영 차액	△33,297		96,601		△129,898

73) 자체수익 :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징수활동을 통해 조달한 수익

74) 기타수익 : 교육청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75) 기타비현금지출비용 :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학비감면 등 비용중에서 특정사업에 분류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되는 비용

○ 2013회계연도 **총수익은 7조 7,913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7조 8,367억원)보다 △453억원(△0.5%)이 감소한 것임

- 수익은 중앙정부·이전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7조 4,149억원으로 수익의 95.1%를 차지하는 바, 직전회계연도말보다 △648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직전회계연도 대비 보통교부금수익(△1,758억)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익이 △2,187억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이 2,033억원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전수익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됨

· 자체수익은 1,703억원(2.1%)으로 직전회계연도말 보다 △15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익은 2,061억원(2.6%)으로 345억원이 증가하였음

○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1%로서 직전회계연도 대비 0.2% 감소하였고, 이는 교육청의 대부분의 수익이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이전수익이며, 학생수 감소로 자체수익 중 주요 수입원인 수업료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5-7〉 재정자립도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총수익(A)	자체수익(B)	재정자립도(B/A)	직전연도 대비증감
2014	7,791,395	170,325	2.1	△0.2
2013	7,836,734	185,394	2.3	△0.1
2012	7,788,485	191,669	2.4	-

- **총비용은 7조 8,246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7조 7,401억원) 대비 845억원 (1.0%)이 증가하였음
 - 비용은 인적자원운영 3조 8,989억원(49.8%),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5,687억원(20.0%), 교육복지지원 8,408억원(10.7%),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288억원(8.0%), 교수-학습활동지원 3,419억원(4.3%), 보건/급식/체육활동 3,097억원(3.9%) 등임

- 재정운영표의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332억원**으로써 직전회계연도(966억원) 대비 **△1,298억원(△134.4%)**이 감소한 바, 이는 수익(△453억원)의 감소와 비용(845억원)도 증가하여 발생한 결과로 사료됨

다.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변동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⁷⁶⁾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 것임

〈표 5-8〉 순자산 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기말순자산(A+B+C)	12,273,045	100.0	12,306,342	100.0	△33,297
고정순자산					
1.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1,691,936		11,623,929		68,007
2. 증가	675,460		663,082		12,378
3. 감소	722,546		595,075		127,471
4. 차기이월고정순자산(A)	11,644,850	94.9	11,691,936	95.0	△47,086
특정순자산					
1. 전기이월특정순자산	-		-		-
2. 증가	-		30,934		△30,934
3. 감소	-		30,934		△30,934
4. 차기이월특정순자산(B)	-		-		-
일반순자산					
1.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614,406		585,812		28,594
2. 운영차액	△33,297		96,602		△129,899
3. 증가	722,546		626,009		96,537
4. 감소	675,460		694,016		△18,556
5. 차기이월일반순자산(C)	628,195	5.1	614,406	5.0	13,789

76)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 **기말순자산⁷⁷⁾**은 직전회계연도(12조 3,063억원)보다 △332억원이 감소한 **12조 2730억**으로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이 11조 6,448억원(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이 6,281억원(5.1%)임
- **고정순자산⁷⁸⁾**은 회계연도 중 470억원이 순감소하여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은 11조 6,448억원임
- 순자산의 증가는 직전회계연도(6,630원)보다 123억원 증가한 6,754억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직전회계연도(5,950억원)보다 1,274억원 증가한 7,225억원임
- **특정순자산⁷⁹⁾**은 직전회계연도에는 감채적립금의 적립 306억원 등 사용목적이 정해진 적립금을 조성·사용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적립하지 않은 것임
- **일반순자산⁸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은 6,144억원고, 운영차액 △332억원 및 일반순자산의 순증가 470억원 감안한 후의 차기이월 일반순자산은 6,281억원임

77) 기말순자산 = 차기이월고정순자산 + 차기이월특정순자산 + 차기이월일반순자산

78)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79)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80) ④**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IV. 주요 질의토론 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상 낙찰차액에 대한 부실한 자료제출과 해명은 의회의 결산심사기능을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승인안 중 낙찰차액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을 촉구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524
----------	------------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2. 결산개요

가. 예산회계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세입·세출예산	7,704,919,815,000	
세입·세출예산현액	7,915,133,339,343	
세입결산액	7,925,316,025,087	
세출결산액	7,741,815,299,574	
계	183,500,725,513	
세계잉여금		
명시이월액	14,298,389,000	
사고이월액	41,729,340,423	
계속비이월	0	
순세계잉여금	125,696,199,793	
보조금 잔액	1,776,796,297	
지방교육채 상환	0	

나. 재무회계의 결산

1)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연도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자 산		13,594,603,971,316	
부채와순자산	계	13,594,603,971,316	
	부 채	1,321,558,933,633	
	순자산	12,273,045,037,683	

2) 재정운영보고서

해당연도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익	7,791,395,117,170	
비 용	7,824,692,129,552	
운영차액	-33,297,012,382	